

울산지방법원 2019. 8. 23 선고 2019가단122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9. 7. 12

판 결 선고 2019. 8. 2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울산 울주군 C 대 198㎡ 중 별지 지적도 기재 순번 1, 2, 3,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2㎡, 같은 지적도 기재 순번 4, 5, 6, 7, 4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ㄷ'부분 5㎡ 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의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C 대 19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9. 1. 18.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129㎡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, 위 건 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과 노' 부분(이하 위 각 부분을 통 틀어 '이 사건 침범 부분'이라고 한다)을 각 침범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2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위 침범 부분 토지를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는,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미 조정이 성립된 바 있어 원 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, 피고의 위 주장을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건대, 을2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D가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2016가단17384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, 위 소송에서 피고 와 D 사이에 2018. 3. 20. 'D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의 피고 건물 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지 않는다' 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나,위 조정의 기판력이 전소송의 소송물 또는 계쟁물이 아닌,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인도 받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는 또한,D가 피고와 위와 같이 조정을 하고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 원 고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장지혜

별지